

2019년도 제2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11. 8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 : 박성호 위원, 박재화 위원, 박정인 위원, 최승수 위원(분과위원장)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8건(안건번호 제 2019-143900호~143960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143900호-143960호(●●●●● 사이트의 '쌩니다 천리마마트' 등 108건의 게시물)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,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B 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143900호-143960호 ●●●●● 사이트의 중점 방송 쌩니다 천리마마트 등 108건의 게시물 는 불법 복제한 영상 저작물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C 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143900호~제2019-143960호 108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 저작물 음악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D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방송, 음악에 관한 사안들로서, 그 중에는 예컨대 방송 쌩니다 천리마마트 (2019), 음악 새 사랑(송하예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

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
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2019년 제247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11. 8.

분과위원장 최승수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재화

위원 박정인